

의안번호	2210193
의 퇴 인	장철민 의원
회 답 일	2025. 6. 27.
추계번호	25A2635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출자)	안 제1조(목적)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 공사를 설립 * 충청권(안 제2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	의무규정
	안 제3조(법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안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자본)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함(제1항) 자본금은 정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제2항)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각 은행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운영 지원)	안 제5조제3항(자본)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사에 ①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②정관 변경, ③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④충청권산업혁신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안 제1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의무규정
	안 제16조(이사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둠	의무규정
	안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	의무규정
	안 제20조(업무의 범위)	공사는 ①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②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③국가 또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④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투자·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사채 보증)	안 제25조제3항(사채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제1항)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함 (제2항)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제3항)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 (제4항)	재량규정
4 (기금 출연)	안 제29조(충청권산업 혁신기금의 설치)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의 재편, 충청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둔	의무규정
	안 제3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①공사로부터의 전입금, ②정부의 출연금, ③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④금융회사의 출연금, ⑤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⑥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	의무규정
	안 제32조(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하며, 충청권 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신용 공여 등 자금 지원,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	의무규정
5 (기금채 보증)	안 제31조제5항(충청권 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 등)	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제1항)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항)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 (제4항)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6 (감독)	안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제1항)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사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배당 수입)	안 제5조제5항(자본)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	의무규정
	안 제24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 ①이월손실금의 보전, ②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③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④주주에 대한 배당 순서로 처리	의무규정
8 (벌금 등 수입)	안 제40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안 제41조(과태료)	①제8조를 위반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출자)	안 제1조(목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3조(법인)	
	안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자본)	
2 (운영 지원)	안 제5조제3항(자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임원)	
	안 제16조(이사회)	
	안 제18조(직원의 임면)	
	안 제20조(업무의 범위)	
3 (사채 보증)	안 제25조제3항(사채의 발행)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기금 출연)	안 제29조(충청권산업 혁신기금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30조(기금의 조성)	
	안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5 (기금채 보증)	안 제31조제5항(충청권 산업 혁신기금 채권의 발행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감독)	안 제35조(감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배당 수입)	안 제5조제5항(자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24조(손익금의 처리)	
8 (별첨 등 수입)	안 제40조(벌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41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성장을 위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이를 위해 공사 회계와 구분되는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여 충청권 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 제정안은 공사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운영 지원, 사채 및 기금채 보증, 기금 출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출자) 안 제5조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은 정부 및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운영 지원) 안 제5조제3항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제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 경비의 범위에는 안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안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른 임직원의 인건비, 안 제16조에 따른 이사회 운영 경비, 안 제20조에 따른 공사의 고유사업 및 수탁사업 운영 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사채 및 기금채 보증) 안 제25조제3항과 제31조제5항에 따라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므로,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 사업비 편성 등에 따라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기금 출연) 안 제30조에 따라 기금은 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하므로, 출연금 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감독) 안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소요로 인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한편, 배당수입 및 벌금 수입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증가 요인

- (배당수입) 안 제5조제5항에 따라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제24조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제4순위로 주주에게 배당되므로 배당수입 발생으로 인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벌금·과태료 수입) 안 제40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1조는 직무 외 영리 목적 종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의 지출 요인에서 수입 요인을 차감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공사의 사업, 기금의 규모, 재원 조달 방식 및 인력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권역 내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출자·출연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투자·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 유사한 선례를 준용하여 공사의 인력 규모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공사 설립을 위한 3조원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도 출자 주체가 되며, 공사에 설치될 기금의 경우 금융회사의 출연금 또한 조성 재원에 포함되므로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일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이에 제정안에 따른 공사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공사의 인력 규모 및 임직원 보수 수준에 대한 참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산하 투자·융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정원·자본금·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참고자료]와 같음
- * [참고자료] 투자·융자 관련 공공기관의 정원·자본금·예산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주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투자·융자 관련 공공기관의 정원·자본금·예산 현황

구분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투자공사
목적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정원	임원	5명 (기관장 1, 이사 3, 감사 1)	8명 (기관장 1, 이사 6, 감사 1)	5명 (기관장 1, 이사 3, 감사 1)
	직원	3,369명 (일반정규직 3,233명, 무기계약직 136명)	1,457명 (일반정규직 1,222명, 무기계약직 235명)	327명 (일반정규직 297명, 무기계약직 30명)
	합계	3,374명	1,465명	332명
평균 연봉 (2024 결산)	임원	－ 기관장: 385,408천원 － 상임이사: 290,171천원 － 감사: 290,171천원	－ 기관장: 338,090천원 － 상임이사: 242,291천원 － 감사: 227,711천원	－ 기관장: 429,946천원 － 상임이사: 315,515천원 － 감사: 317,814천원
	직원	－ 일반정규직: 114,659천원 － 무기계약직: 57,520천원	－ 일반정규직: 85,474천원 － 무기계약직: 41,702천원	－ 일반정규직: 123,738천원 － 무기계약직: 54,136천원
자본금	법정	30조원	－	1조원
	출자	26조 3,165억 5,900만원	－	1,000억원
예산 (2025 예산)	인건비	491,803백만원	114,606백만원	60,615백만원
	운영비	61,244백만원	26,972백만원	63,154백만원
	사업비	41,136,153백만원	5,840,687백만원	143,177백만원
	차입금 상환	－	5,330,000백만원	－
	기타	761,885백만원	752,641백만원	281,606백만원
	합계	42,451,085백만원	12,064,906백만원	548,552백만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